

2025. 12. 3.(수)

2025년 연구관리 업무설명회

# 학생인건비 운영·관리 및 부당회수 예방 안내

# 목차

**I.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**

**II. 학생인건비 등록 절차**

**III.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**

**IV. 학생인건비 지정취소 기준**

**V. 학생인건비 주요 변경 사항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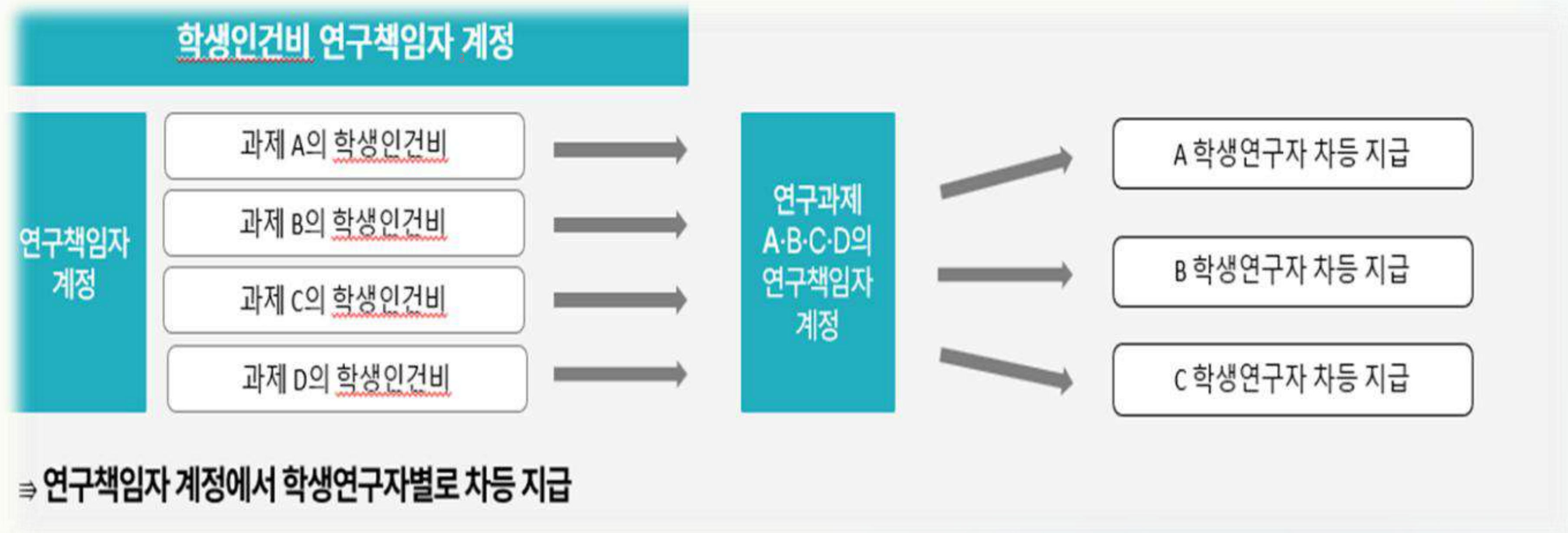
**VI. 학생인건비 FAQ**

# 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란?”

## 제도 설명

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는 학생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전남대학교 2025.1.1. 기관단위 전환 지정 → 2025.3.1. 시행



- 학생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책임 하에 관리, 잔액의 반납 및 정산 면제 ▶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
- 연구책임자 계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(학부 최소 지급률: 10%)

# 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란?”

## 제도 설명

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는 학생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전남대학교 2025.1.1. 기관단위 전환 지정 → 2025.3.1. 시행



⇒ 연구개발기관단위(산학협력단) 전체계정에서 지급대상 학생연구자 모두 동일금액 균등 지급

※ 균등지급액은 학기(또는 학년) 단위로 작성하며, 소속 학과(학부)를 통해 지급대상 명단 제출

- 기관단위(산학협력단) 학생인건비 계상금액 기준 최소 지급률: 20%
- 학과 또는 학부 등 세부 단위는 추가 운영 가능

# “학생인건비 지급대상 및 제출 서류”

## 학생인건비 지급대상

### ■ 학생인건비란?

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 되는 인건비

- ✓ 학사과정: 월 130만원
- ✓ 석사과정: 월 220만원
- ✓ 박사과정: 월 300만원 (참여율 100% 기준)
- 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(2022.8.8.)

### ■ 학생연구자 범위

- ✓ 학사학위과정,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, 석박사통합과정,
- ✓ 학석사 연계과정(전남대 대학원 운영지침에 따라 박사기준 적용)
- 근로계약 체결한 휴학생 및 수료 후 등록생 포함

## 제출 서류

### ■ "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" 제출 불필요

- ✓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총 인건비 계상률만 고려

### ■ 연구참여확약서

- ✓ 학생연구자 ↔ 연구책임자 ↔ 산학협력단장 3자간 확약 작성
- ✓ 확약체결 단위: 학기(6개월) 또는 학년(1년) 단위 작성
- ✓ 현) 국가연구자번호: 반드시 IRIS 본인 등록(필수)
- ☞ IRIS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서비스 통합 안내문 확인

## 02

학생인건비 등록 절차

# “학생인건비 등록 및 지급 절차”



## 연구원사이트

로그인

 아이디 저장

[아이디/비밀번호찾기](#) | [회원가입](#)

## 공지사항 >

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대상자 10월 증빙 제출 안내	2025.10.30
<b>긴급</b>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9월분 지급 대상자...	2025.10.15
<b>긴급</b> 2025년 1학기(5-8월분 소급) 연구생활장려금 부...	2025.09.05
학생연구자 권익보호를 위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...	2024.08.05
CRAMS+U_학생연구원메뉴얼_연구참여확약	2023.01.20

[연구행정통합시스템](#)

[학생연구자고충상담](#)

[관련사이트](#)

Copyright © 2024 WEBCASH. All rights reserved

※ 학생사이트 바로가기([https://rerp.jnu.ac.kr/issue\\_main2.act](https://rerp.jnu.ac.kr/issue_main2.act))

★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본인 계좌 등록 신청 ▶ 담당자 승인 ▶ 연구책임자 변경 신청 ▶ 학생 전자확약



# 02

## 학생인건비 등록 절차

### 본과제

과제정보

과제책임자/과제명: 하준석

과제책임자: 하준석(화학공학부/교수) | 과제명: (2024-1769-01)[FIS] 반도체 첨단패키징 현장실무형 인재양성 / 1연차

과제성격: R&D / 국가연구개발사업 / 비수익 / 연세 | 과제기간: 2024-07-01 ~ 2024-12-31 | 연계구분: (신)통합이재바로

기본정보 | 예산 | **참여인력** | 청구서 | 지출현황 | 카드 | 자금현황 | 단체정보 | 부가증빙 | 매입/매출증빙

최종승인내역: 차수 3 | 신청일자: 2024.11.05 | 승인일자: 2024.11.05 | 내용: 참여인력신청(신규-김대일)20241101

성명/학번: [ ] 참여구분:  전체  계속  종료

선택	No	조희	구분	연차	성명	주민등록번호	학번/사번	국가연구자 번호(OR)	학위과정	소속구분	소속
<input type="radio"/>	20	조희	참여연구원	학생연구자	황욱진	000322-3*****	195605	13266907	일반학생	본교	화학공학부
<input type="radio"/>	19	조희	참여연구원	학생연구자	이상현	990221-1*****	192750	13278517	일반학생	부교	화학공학부

###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과제

학생인건비 지급계획등록

계정책임자: 김재국 | 계정명: (2010-2488) 학생인건비 물량제 관리(신소재공학부 김재국) 년차: 22534

신상정보: 차수: 63 | 승인정보: 임시저장

성명/학번: [ ] 참여구분:  전체  계속  종료

참여인력정보 가져오기

No.	학번	성명	주민번호	학위과정	학적상태
1	20181149	홍현민	991118-1*****	일반학생	(학생)재학

지급인력내역

선택	No	성명	주민등록번호	학번	학위과정	소속	참여인력	참여기간
<input type="checkbox"/>	1	고우영	981211-1*****	247471	일반대학원석...	신소재공학과		2024-03-01 ~ 2025-02-28

# 02

## 학생인건비 등록 절차

The screenshot displays a web application for managing student personnel fees. The main window is titled '인건비통합관리 지급계획 등록/수정' (Personnel Fee Integrated Management Payment Plan Registration/Modification). The form contains several sections: '기본정보' (Basic Information) with fields for department, name, ID, and phone number; '참여정보' (Participation Information) with fields for position and department; and '지급계획' (Payment Plan) with a date range. A table on the right shows a list of personnel with columns for name, department, position, and status. A search bar is located at the top right, and a '신청' (Apply) button is at the bottom right. A '선택' (Select) button is also visible in the bottom left of the form area.

※ 과제관리 > 학생인건비통합과제관리 > 학생인건비 지급계획등록 > 책임자 조회 > 신규·변경 인건비 생성 > 신청

# 02

## 학생인건비 등록 절차

**연구원사이트**

My

대표직번: [ ]

[0] **확약동의요청**

공지사항 | FAQ

1.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대상자 10월 중명 제출 안내
2. **인공**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9월분 지급 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
3. **인공** 2025년 1학기(5-8월분 소급) 연구생활장려금 부족분 지급 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
4. 학생연구자 권익보호를 위한 학생인건비 부담회수 금지 안내
5. CRAMS+U 학생연구원메뉴얼\_연구참여확인

**연구원사이트**

연구참여확약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

선택	No	학번/직번	소속학과	학위과정	재직상태	개인정보동의여부	개인정보동의일자
<input type="radio"/>	1				(학생)재학	Y	2024-05-08

1개

개인정보제공동의여부 | 개인정보제공동의일자

**확약대상조회** | 확약정보조회

No	계정책임자	계정번호	계정명	직번	참여기간	담당업무	확약자수	변경전	변경후	개인정보동...	개인정보동의일자	확약상태	상태일자
연구참여 확약대상으로 나와있는 분 체크													

0개

연구참여확약동의

상세내역

No	계정책임자	계정번호	계정명	지급월	변경신청기간	변경전지급률	변경전금액	변경후신청기간	변경후지급률	변경후금액
----	-------	------	-----	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	---------	--------	-------

※ 학생연구지원 포탈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있는 **확약동의요청** 버튼 클릭 > **연구참여 확약대상** 체크 > **연구참여확약 동의**

# 02

## 학생인건비 등록 절차

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[별지 제1호서식]

###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(학생인건비통합관리)

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(해당없음)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김장호 과 학생연구자 문효진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.

#### 1. 학생연구자 인적사항

성명	문효진	학번	224701	생년월일	2003.10.26
소속(학과명)	융합바이오시스템계공학과	과정	(일반학생) 과정 (1) 학기		
국가연구자번호	13306088				
주소	경상남도 진주시 초창로14번길 29				
연락처	(휴대전화번호) 01073667988		(E-mail) mhj6382@naver.com		

#### 2. 연구참여정보

가. 연구참여기간 : 2025.01.01 ~ 2025.02.28

나. 담당업무(역할) : 자료조사, 실험수행

※ 연구수행내용,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

다.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

구분	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	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	합계 (세금포함)
지급액	원	500,000 원	1,000,000 원
지급률*	%	38.46 %	38.46 %

\* 지급률 = 월지급액 /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

라. 학생인건비 지급일 : 매월 광주 17일 / 여수 25일

마. 지급방법 :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

※ 참여중단-종료 시 중단-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(월 등)수에 대해 일할(월할 등) 계산하여 지급함

바.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(해당없음)

성명	해당없음		
소속(학과명)	직급		
연락처	(연구실)	(E-mail)	

1/2

#### 사.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

성명	김장호		
소속(학과명)	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	직급	조교수
연락처	(연구실) 0625305181	(E-mail) rain2000@jnu.ac.kr	

#### 3. 기타 확약사항

가.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학적변동, 취업 등 업무상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.

나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,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,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.

다.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·보건교육을 실시하고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, 상해·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·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라. 계정책임자는 인권, 양성평등,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·폭행·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.

마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(학생인건비부당회수)하지 않는다.

바.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.

사.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,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아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2025년 01월 07일

학생연구자 : 문효진 (문효진20250107)  
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: 김장호 (김장호20250107)  
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: 해당없음 (서명 또는 인)  
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: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(서명 또는 인)



2/2

- ※ 순서 정리: ① 학생사이트 회원가입 후 계좌신규(변경)신청 ▶ ② 담당자 승인 ▶ ③ 연구책임자계정 참여인력 정보가져오기(신규) ▶ ④ 변경 신청 ▶ ⑤ 카카오톡 발송 ▶ ⑥ 학생 개인정보 동의 및 전자확약 ▶ ⑦ 담당자 결재 완료

# “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안내 사항,”

## ◆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란?

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학생인건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를 말합니다.

-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
-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



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(연구개발비 사용액 부당회수 등 금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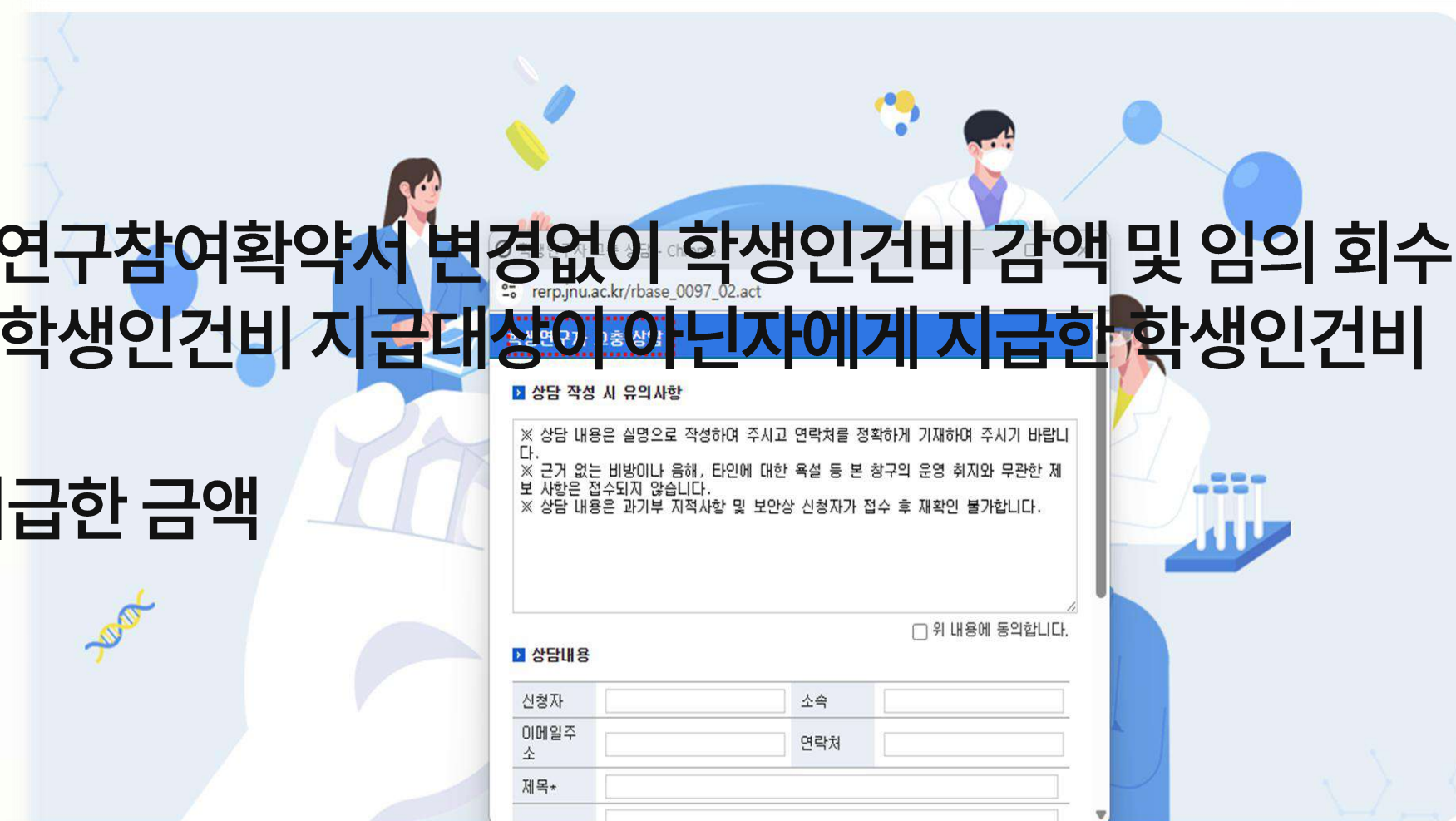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는 **제재처분 대상**이며, **형사처벌 대상**이 될 수 있습니다.
- 참여연구자 누구라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관여할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◆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

- 사례 1)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
- 사례 2) 연구참여확약서 변경없이 학생인건비 감액 및 임의 회수
- 사례 3)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지연
- 사례 4)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닌자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
- 사례 5) 학생연구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학생인건비
- 사례 6)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월별 지급률을 정하고 지급한 금액

## ◆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안내

- C-RAMS+U 학생사이트: <https://rerp.jnu.ac.kr>
-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고충처리신고센터: <https://sanhak.jnu.ac.kr>



### 연구원사이트

S10113

.....

아이디 저장

### 공지사항 >

-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대상자 11월 중반 제출 안내
-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대상자 10월 중반 제출 안내
- 인공**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9월분 지급 대상자
- 인공** 2025년 1학기(5-8월분 소급) 연구생활장려금 부
- 학생연구자 권익보호를 위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
- CRAMS+U 학생연구원메뉴얼 연구참여확약

# 04

학생인건비 지정취소 기준

# “학생인건비 지정취소 기준,”

## 요건

- + 최근 5년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책임자계정수의 2% 초과 1회
- +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지급비율(잔액 포함)의 기관 평균이 50% 미만 2회
- +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 및 소급 지급한 경우
- +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,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충족 등

## 연구책임자별 지급비율 확인

전남대학교 C-RAMS+U

연구비관리 >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> 학생인건비 통합계정관리 > 기본정보

### 학생인건비 통합계정관리

계정책임자/계정명: 민정준

계정책임자: 민정준(의학과/부교수) | 계정명: (2010-1993)학생인건비 통합계 관리(의학과 민정준) | 연구원번호: 40993 | 연구책임자계정

계정내역: 기본정보 | 지급계획 | 청구(결의)서 | 자금현황

기본정보

계정개요

계정책임자	민정준(의학과/부교수)	개인정보동의완료 (2025.01.09)	등록일자	2010-08-12
진행상태	진행	계정담당자	류수정(내선:5031)	

지급비율

년도	전년도 잔액	이자액	입금액	수입총액 (A)	지급총액 (B)	잔액 (C=A-B)	지급비율 (D=B/A*100)	지급총액(예정포함) (E)	지급비율(예정포함) (F=E/A*100)	잔액(예정포함) (G=A-E)
2025	42,911,104	0	130,850,000	173,761,104	120,290,000	53,471,104	69.2	124,270,000	71.5	49,491,104

# 05

학생인건비 주요 변경 사항

## 학생인건비 제도 주요 변경 사항 (25.4. 별권1참고)

구분	종전	혁신법
학생인건비 계상	<p>학생인건비계상률·지급률 산정 시 타 재원으로 발생한 소득 고려 필요 ※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 확인 필요</p>	<p>학생인건비계상률·지급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총인건비계상률만 고려 ※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 확인 불필요</p>
	<p>(신 설)</p>	<p>학생인건비계상률·지급률 산정 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(BK21사업 등)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(학생인건비 포함) 및 장학금, 강사·비전임교원 인건비,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※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·지급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 (※ '23년도 변경사항 - '단기 근로소득, 창업소득'이 '근로소득 및 사업소득'으로 변경됨)</p>
연구참여 협약 체결	<p>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,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상</p>	<p>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,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여 계상 ※ 해당 학생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학생인건비에서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</p>
	<p>학생연구자 ↔ 계정책임자양자 간 협약</p> <p>협약체결 단위 - (통합관리기관) 학기 또는 학년 단위 - (비통합관리기관) 월 단위</p> <p>(신 설)</p>	<p>학생연구자 ↔ 계정책임자 ↔ 통합관리기관장 3자 간 협약</p> <p>협약체결 단위 - (통합관리기관) 학기 또는 학년 단위 - (비통합관리기관) 학기 또는 학년 단위</p> <p>- (공동)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10% 이상이 되도록 관리 - (기관계정)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가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20% 이상을 지급받도록 관리(※ '24년도 변경사항)</p>
학생연구자 지원규정	<p>(신 설)</p>	<p>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은 '학생연구자 지원규정' 마련 및 공개 필요 ※ 학연프로그램,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독정연 포함</p>
지정취소 요건	<p>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% 미만 1회</p>	<p>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% 미만 2회※ 1회 시 연구개발기관계정 신설 의무화 (※ '24년도 변경사항)</p>
	<p>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지급총액의 2% 초과 1회</p>	<p>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학생인건비 옹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% 초과 1회(※ '23년도 변경사항)</p>
	<p>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 소급 지급</p> <p>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충족 등</p> <p>(신 설)</p>	<p>(좌 등)</p> <p>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</p>

# 05

학생인건비 주요 변경 사항

## 학생인건비 제도 주요 변경 사항 (25.4. 별권1참고)

<p><b>기관계정 수입 처리</b></p>	<p>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내체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내체</p> <p>▶ 책임자계정(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)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·계정내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·계정내체(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반납)(※ '25년도 변경사항)</p>
<p><b>전용 계좌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▶ '24년 9월부터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 사용 의무(※ '24년도 변경사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자료상 잔액과 전용 계좌 잔액 일치 확인 필요</li> <li>-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실물이자를 기관계정 또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책임자계정에 적립 필요</li> </ul>
<p><b>정보공개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▶ 운영 결과 점검 자료 제출 전 기관 전체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과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</p>
<p><b>연구책임자 소속 변경 시 잔액이관</b></p>	<p>계정 잔액 규모에 상관없이 과제별 잔여기간 비율에 따라 이관 금액 산출</p>	<p>▶ 계정 잔액이 과제별로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산출한 이관 금액보다 적을 경우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이관 금액 산출</p>
<p><b>과제중단 시 잔액사용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▶ 기관 내 기관계정으로 이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반납</p>
<p><b>자체점검</b></p>	<p>연 1회 이상 실시</p>	<p>▶ 고시 별지 제9호시식(자체점검표)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</p>

# “연구책임자 계정 잔액 처리 및 이관,”

- ▶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-9호)  
연도 말(12.31.기준) 학생인건비 책임자계정 잔액의 기관계정 이체·대체 금액 산출식 :
- = (연구책임자계정 잔액 -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 지급액 or 당해 연도 기관계정 대체액) X 0.2**
-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산출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생인건비 기관계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

( 예시 )

25.12.31. 기준 책임자계정 잔액은 **5천만 원**, 2025년 지급 및 기관계정 이체·대체 금액은 **4천만 원**인 경우 기관계정 이체 또는 국고 반납(기관계정이 없는 경우) 금액은  
**= (5천만원 - 4천만원) x 0.2 = 200만 원**



## 학생인건비 잔액이관 대상자 기준

1.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계정 보유 교원 전체
2. 학생연구자 책임계정은 제외
3. 연구년 등으로 평년 대비 학생인건비가 과소 지급된 경우, 정상 지급된 최근 연도 기준 적용

# “연구책임자 계정 잔액 처리 및 이관,”

## 지급비율 50% 이상

전년도 잔액 3,000만원	+ 당해 연도 수입액 7,000만원	
	- 당해 연도 지급액 8,000만원	= 잔액 2,000만원

잔액 2,000만원	- 당해 연도 지급액 8,000만원	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

= -6,000만원 X 20%

이관 예정액  
0원

## 지급비율 50% 미만

전년도 잔액 3,000만원	+ 당해 연도 수입액 7,000만원	
	- 당해 연도 지급액 4,000만원	= 잔액 6,000만원

= 잔액 6,000만원	- 당해 연도 지급액 4,000만원	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

= 2,000만원 X 20%

이관 예정액  
400만원



### 지급비율에 따른 이관 금액 처리

지급비율 ≥ 50% → 이체대상금액 0원

지급비율 < 50% → 이체대상금액 발생

## “FAQ”

**Q.** 학생인건비통합관리의 학생인건비 소급 지급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?

- A.**
- 학생인건비는 확약한 금액을 확약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소급지급은 불가함.  
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장은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예상치 못한 잔액 부족이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확약한 때에 지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소급 지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.
  -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함.

**Q.** 학생인건비 미지급 상태로 연구 참여 가능한가?

- A.**
-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.  
다만, 총 인건비계상률 100%에 달하는 경우 추가 연구 참여시 미지급으로 참여 가능함.

## “FAQ”

**Q.** 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연구자가 기관계정에서만 지급받아도 되는가?

**A.** ●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시 책임자계정 지급분은 확약하지 않고 기관계정 지급분만 확약하여 지급할 수 있음.

**Q.**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제91조의2에 따라 책임자계정 잔액의 일부를 기관계정으로 이관하기 위한 금액 산출 시 책임자계정의 차년도 확약분은 제외되는가?

**A.** ●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91조의2에 따라 해당 연도 말 계정 잔액 기준으로 이관을 산정하며, 책임자계정에서 이미 차년도에 지급하도록 확약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해당 연도 말 기준 잔액에서 제외하지 않음.

#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

# 부당회수수금지안내

# “캠페인”



**연구비 계상의 정확성**

연구비가 부담 또는 저가 계상되지 않도록 많은 연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중요 연구비를 산정기준을 근거로 정확히 계상되어야 합니다.

**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및 집행기간의 적절성**

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, 일부 연구기간 내에 집행되어야 합니다.

**증빙자료의 객관성, 관리 및 비치**

연구비 집행에 증빙은 책임적인 증빙서류 (세금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카드 지급 증명서 등) 구비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, 증명자료는 해당과제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되어야 합니다.

## 학생연구자 권익보호를 위한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



**학생인건비??**  
**학생인건비란**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합니다.

★ 전남대학교 학생인건비 직급 단계계급률 100% 기준  
 학사: 130만원  
 석사: 220만원  
 박사: 300만원  
 \* 연구책임자계급의 총 학생인건비 지급률 50% 이상 유지

**직급단가의 20% 이상 지급** (여자는 10%)

**학생인건비 부당회수??**  
**학생인건비 부당회수란** 연구개발비에서 지급 된 학생인건비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.

**사례 1**  
 A교수는 B학생의 자택으로 연구참여약서 변경 없이 편의로 감액하여 지급

**사례 2**  
 A교수는 B교수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후, 지급한 학생인건비를 식비, 워킹샵 비용 등으로 사용을 위해 B학생 계좌로 이체 후 관리

**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**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참여제한, 연구비 회수 뿐만 아니라, 인사상 징계 및 항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**전남대학교 공식 신고채널**

1. 고충처리신고센터: [sanhak.jnu.ac.kr](http://sanhak.jnu.ac.kr)  
 > 고객센터 > 고충처리신고센터

**2. 학생사이트 학생연구자 고충 상담**

[https://roro.jnu.ac.kr/issue\\_main.act](https://roro.jnu.ac.kr/issue_main.act)

# Thank you for listening

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발표자 연구지원3팀장 류수정 ☎ 5031

문의 ☎ 광주 김서영 0921 / 여수 이가화 6903

